

『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(안 제3조)
 -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단,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,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
- 지원사업(안 제4조)
 -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
 -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
 - 기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 사업
- 지급방법 및 시기(안 제5조)
 -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매분기별 계좌입금
 -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지급대상자의 결정(안 제6조)
 - 매년 1/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
 -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단체장에게 확인의뢰

4. 참고사항

-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참전유공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를 총 제7조로 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하고 (안 제3조)
- 지원사업은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, 사망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, 기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(안 제4조)
- 지급방법에 있어서 참전명예 수당은 신청서에 의거 매분기별 계좌입금으로,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토록 하였음 (안 제5조)
-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매년 1/4분기 중 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통보토록 하였으며
- 지급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토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6.25 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본 조례와 관련, 도에서는 2007. 6. 14 「경상북도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며, 향후 규칙을 제정 2009년도 하반기부터 도내 2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도비부담 1만원 정도의 지원을 검토 중이나, 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은 자율적으로 시군실정에 맞게 시행 예정임
- 따라서 본 조례는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있고, 참전명예 수당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도비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 됨